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4-347호

2025년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사업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기관의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우수기술의 제품 상용화 단계로 진입 및 시장진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26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1

공고 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나. 지원규모 : 총 1,330백만원, 19과제 내외

사업명	유형	과제 수
농업공공기술진흥	① 기술상용화지원	17과제 내외
	② Fast Track	2과제 내외
	계	19과제 내외

다. 지원조건

- 기술이전 제품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생산부터 홍보·마케팅까지 제품 상용화 및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 기술 적용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평가 및 표준화, 시장테스트 및 양산 등 기업성장을 위한 비용을 지원함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비 고
공 통	총 사업비의 50% 이하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물/현금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기술상용화지원 (단년)	(정부지원금 한도) 과제당 <u>최대 70백만원</u> (과제수행기간) 협약일 ~ '25.11.30 ※ 단독 주관		
Fast Track (최대 2년)	(정부지원금 한도) 과제당 <u>연간 최대 70백만원</u> (과제수행기간) 협약일 ~ '26.11.30(최대 2년) ※ 단독 주관		

라. 신청자격 등

1) 공통 자격

-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¹⁾ 기술²⁾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이전받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¹⁾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기술거래 중개를 받은 기술에 한함)

²⁾ 특허(출원/등록), 실용신안에 한함

-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첨단분야³⁾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³⁾ [참고 1] 기술분야 또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함

2) 기술상용화 Fast Track 지원자격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원가능

- (기술료) 기술이전 계약체결 규모가 선납기술료 기준 10백만원 이상

- * 복수의 선납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해당 기술을 모두 활용해야함.

- (전용실시) 공개경쟁입찰로 전용실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지원분야

- [붙임 1]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첨단·미래기술

지원코드	첨단분야	기술구분
1 ~ 16	정보	네트워크, 이동통신, ATI, 융합SW 등
17 ~ 26	생명공학	바이오, 의료기기, 마이크로바이옴 등
27 ~ 35	나노	탄소/나노융합, LED/광응용, 디스플레이 등
36 ~ 37	우주항공	항공, 드론
38 ~ 44	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청정기반 등
45	기타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46		그 밖의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술

* 첨단분야의 기술구분은 반드시 [붙임 1]을 확인하여 지원

4) 신청제한 사항

- 공고문에서 제시된 유형(㉠ 기술상용화 Track, ㉡기술상용화 Fast Track) 중 1개 신청 가능 / 중복지원 불가
-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농식품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중 1개 신청가능 / 중복지원 불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 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제출 시 인정)
- 기술이전 계약체결일, 실시기간 시작일 모두 과제 **접수마감일** (2025. 1. 24.) 이전일 경우 인정

5) 지원 제외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② 신청자(사업체 또는 사업주)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¹⁾을 1회 지원 받고, 과제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③ 신청자(사업체 또는 사업주)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¹⁾을 2회 지원 받고, 과제종료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④ 신청자(사업체 또는 사업주)가 수행중인 과제²⁾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⑤ 사업과제가 신청자에게 이전에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⑥ 신청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사업화 지원사업¹⁾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⑦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³⁾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⑧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⑨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⁴⁾⑩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¹⁾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 농업기술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²⁾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Fast Track),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전략

³⁾예외 : ①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②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③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채총계 계산은 (부채총계/자본총계) x 100 으로 함

⁴⁾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마. 공고 및 접수기간 : '24. 12. 26.(목) ~ '25. 1. 24.(금), 14:00까지

바. 과제 수행기간

○ 기술상용화지원 1단계 : 협약체결일 ~ '25. 11. 30.

○ Fast Track : 협약체결일 ~ '26. 11. 30.

※ 단 1차년 연차평가 결과 매우 미흡 시 협약 해지

사. 선정평가 일정

○ 신청자격 사전검토 : '25. 1. 30.(월) ~ '25. 2. 5.(수)

○ (1차) 서면 평가 : '25. 2. 11.(화) ~ '25. 2. 13.(목)

○ (2차) 대면(발표) 평가 : '25. 3. 4.(화) ~ '25. 3. 6.(목)

○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필요 시 별도 실시

※ 신청자격의 지원제외 항목에 해당할 경우 사전검토 단계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탈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통지 이후에도 신청(지원)제외 대상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 취소·협약해지·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서면평가,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필요 시) 세부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보 하며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요인으로 평가가 제한될 경우 일부 서면평가는 서류검토, 발표평가는 온라인 등으로 진행할 수 있음

※ 각 평가결과는 평가일정 종료 후 5일 이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oat.or.kr) 및 과제책임자 이메일을 통해 개별통지 함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아. 우대 및 감점사항

□ 우대가점 * 가장 높은 1개만 가점인정

연번	우대 사항	확인	가점												
①	최근 5년 이내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또는 공공기술진흥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 업체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또는 공공기술진흥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종합평점 90점 이상)등급으로 기재된 최종평가 결과표 * '21년 참여업체부터 해당	2점												
②	최근 5년 이내 농촌진흥청장이 수여한 표창을 받은 업체 또는 대표	수상기업명 또는 대표명이 기입된 농촌진흥청장 표창	2점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인증서	1점												
④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의한 경영혁신형 농산업체(MAIN-BIZ)	경영혁신형 농산업체(MAIN-BIZ) 인증서	1점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1점												
⑥	최근 5년 이내 농업실용화기술R&D지 원 또는 공공기술진흥사업 매출 성과 등급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정부출연금 대비 과제관련 매출 성과 ※ 성과등급 지수 = 사업수행을 통해 발생한 제품 매출액(백만원) (조사기 간 누적매출) ÷ 정부출연금(백만원) <table><tr><th>성과등급</th><th>성과등급 지수</th><th>가점</th></tr><tr><td>A</td><td>10점 이상</td><td>3</td></tr><tr><td>B</td><td>5점이상~10점미만</td><td>2</td></tr><tr><td>C</td><td>3점이상~5점미만</td><td>1</td></tr></table>	성과등급	성과등급 지수	가점	A	10점 이상	3	B	5점이상~10점미만	2	C	3점이상~5점미만	1	3점 ~ 1점
성과등급	성과등급 지수	가점													
A	10점 이상	3													
B	5점이상~10점미만	2													
C	3점이상~5점미만	1													
⑦	최근 5년 이내 농업실용화기술R&D지 원 또는 공공기술진흥사업 일자리창출 성과등급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정부출연금 10억원 당 일자리 창출 수 ※ 성과등급 지수 = 신규 일자리창출수 × 10억원 ÷ 정부출연금(원) <table><tr><th>성과등급</th><th>성과등급 지수</th><th>가점</th></tr><tr><td>A</td><td>100점 이상</td><td>3</td></tr><tr><td>B</td><td>50점이상~100점미만</td><td>2</td></tr><tr><td>C</td><td>30점이상~50점미만</td><td>1</td></tr></table> * 지원 당해연도 실적이며, 취업 지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단 위로 환산하여 산출	성과등급	성과등급 지수	가점	A	100점 이상	3	B	50점이상~100점미만	2	C	30점이상~50점미만	1	3점 ~ 1점
성과등급	성과등급 지수	가점													
A	100점 이상	3													
B	50점이상~100점미만	2													
C	30점이상~50점미만	1													

□ 감점 * 합산 최대 3점까지만 감점 적용

연번	감점 사항	감점
①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국가사업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된 과제책임자가 사업을 신청한 경우	3점
②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동사업 또는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의 중 단, 실패·극히불량으로 판정받은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가 사업을 신청한 경우	2점
③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동사업 또는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사업에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과제책임자나 기관이 사업을 신청한 경우	2점
④	동사업 또는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성과조사 시 미응답 또는 조사거부	3점
⑤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내 체결된 국유특허 기술이전에 대하여 정산서 제출 후 기술실시료가 발생하였을 때 기술실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점
⑥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내 체결된 국유특허 기술이전에 대하여 정산서 및 미실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점
⑦	최근 5년 이내 지원사업(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또는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미흡' 이하 과제인 경우	1점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등록방법

가.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및 첨부파일을 factgong@koat.or.kr로 제출
 - 파일명은 ‘[분야] 업체명(과제책임자명)_유형1 또는 2’으로 하며, 계획서에 대표자와 과제책임자의 주소, 연락처(유선전화 및 휴대폰),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 예) [식품] 000농업법인(홍길동)_유형2
- ※ 분야 : 식품, 기계, 농자재, 축산, 화장품(소재) /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임의배정함
- 사업계획서는 20페이지 이상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1천만 원 이상의 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시 [붙임 5] 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등록방법

- 과제 참여를 희망하는 영리기관은 제출서류를 연번에 맞춰 서류별로 구분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출기한 : [2025. 1. 24.\(금\), 14:00까지](#)
 - 전자우편 : factgong@koat.or.kr
- ※ 내부 보안으로 인해 [다음](#) 또는 [네이버 메일](#) 사용 요망

순번	필수구분	제출서류	양식
1	필수	사업계획서	붙임 3
2	필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3	필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4	필수	표준재무제표증명	
5	필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6	필수	기술이전 계약서	
7	필수	과제 차별성 검토 결과	
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정보활용 동의서	붙임 4
9	해당시	시설·장비 도입계획서	붙임 5
10	해당시	우대가점 증명자료	붙임 6
11	해당시	신규인력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붙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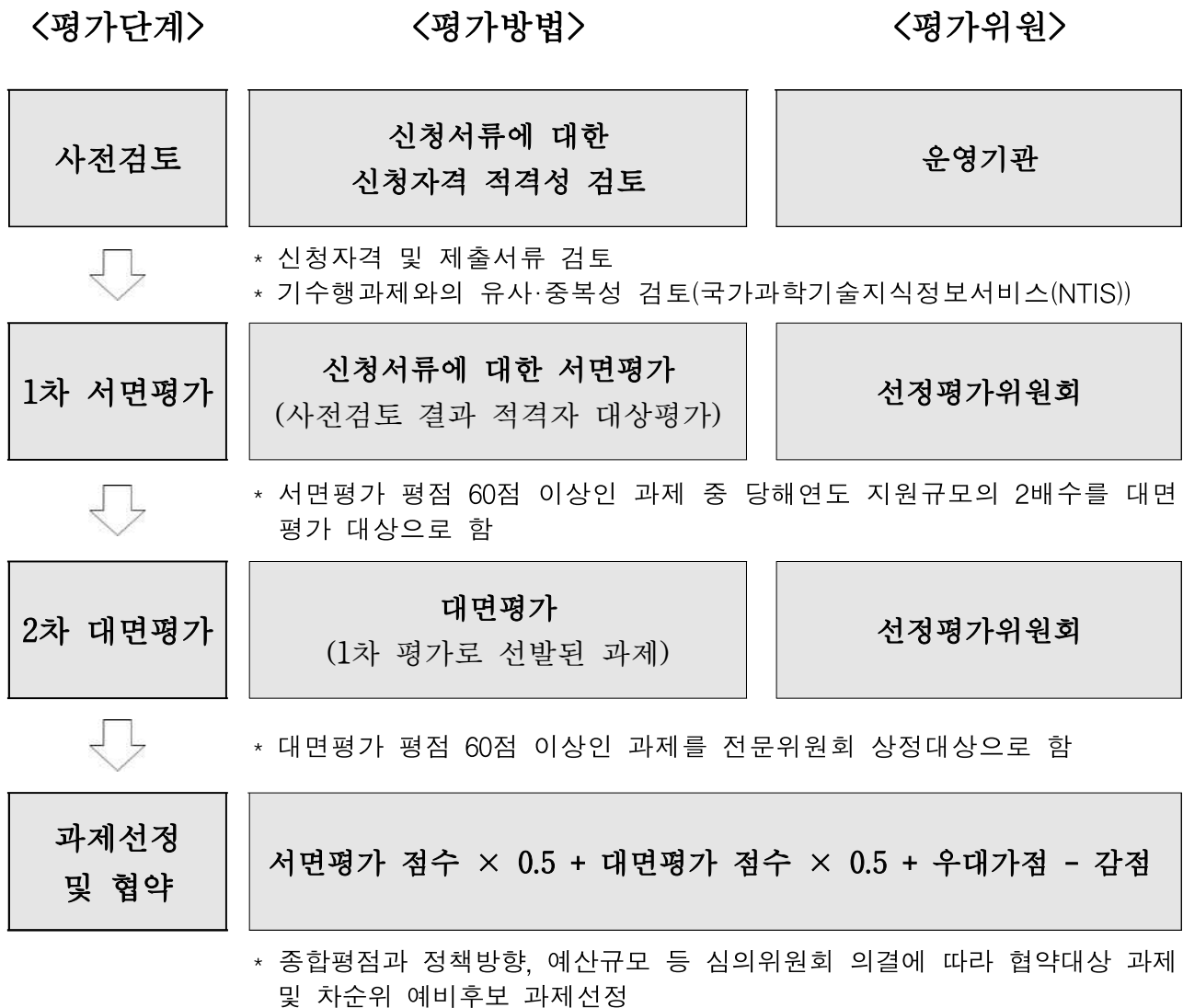
3

과제선정 절차

가. 평가기준

-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평가방법 : 3단계 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의 경우, 대면평가 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과제책임자, 참여인력 모두 해당)는 사업응모를 할 수 없음

※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나.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야 함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다. 응모된 사업계획서는 평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라. 발표평가 시 사업담당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과제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탈락될 수 있으며, 탈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과제책임자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평가일정 미공지 등 평가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바. 접수 마감일 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신규로 기술이전을 받고자 할 경우, 3주 내외의 행정처리 기간이 소요되므로 참고할 것

※ 정산 진행중인 재계약 과제는 과제협약시점까지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미계약시 최종 협약대상에서 제외함

사. 최종 선정 후 협약 시 필수 제출 사항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또는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서류)이 청구되므로 신청기관은 사전에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아. 문의사항은 담당부서에 연락 바람

담당부서	연락처	전자우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지원팀	063-919-1356	factgong@koat.or.kr

[붙임 1] 첨단·미래기술 목록

[붙임 2] 2025년 사업 제출서류 목록

[붙임 3] 사업계획서 서식

[붙임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정보활용 동의서

[붙임 5] 시설·장비 도입 계획서[해당 시]

[붙임 6] 우대가점 해당표

[붙임 7] 신규인력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해당 시]

[붙임 8]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붙임 9] 2025년도 공고과제 평가기준

첨단 분야	지원 코드	첨단기술	첨단 분야	지원 코드	첨단기술
정보분야	1	네트워크	나노분야	27	탄소/나노융합
	2	이동통신		28	섬유의류
	3	방송/차세대 통신		29	화학공정소재
	4	전파위성		30	세라믹
	5	정보가전		31	금속재료
	6	스마트서비스		32	반도체
	7	정보보안		33	LED/광응용
	8	생산시스템		34	디스플레이
	9	기반SW컴퓨팅		35	양자
	10	융합SW	우주항공 분야	36	항공
	11	임베디드SW		37	드론
	12	지식서비스	환경, 에너지 분야	38	이차전지
	13	AI		39	에너지자원
	14	사이버보안		40	원자력
	15	첨단모빌리티		41	신재생에너지
	16	로봇		42	전력
생명공학 분야	17	바이오		43	청정기반
	18	의료기기		44	수소
	19	마이크로바이옴	기타	45	신기술인증 기술
	20	합성생물학		46	그 밖의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술
	21	유전자 편집			
	22	대체식품·메디푸드 제조			
	23	바이오사료 제조			
	24	바이오농약비료 제조			
	25	산업용 소재 개발			
	26	의약품 소재 개발			

붙임2
2025년 사업 제출서류 목록

순번	필수 구분	제출서류	양식
1	필수	사업계획서	붙임 3
2	필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3	필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 정부24, 홈택스/(지방세) 정부24, 위택스	
4	필수	표준재무제표증명 * 최근 2개년('22~'23년) 재무제표 제출	
5	필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증명서 발급 사이트 : www.4insure.or.kr **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지원기관 소속이어야 함	
6	필수	기술이전 계약서 * 지자체 기술이전의 경우 필수 제출	
7	필수	과제 차별성 검토 결과 * 과제 차별성검토 사이트 : www.ntis.go.kr ** 과제참여·관리→차별성검토를 진행하고 결과증(.pdf)를 첨부 *** 차별성검토 기준 : 유사도 60, 기간 2004~2024 기준	
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정보활용 동의서	붙임 4
9	해당시	시설·장비 도입계획서	붙임 5
10	해당시	우대가점 해당표	붙임 6
11	해당시	신규인력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붙임 7

농업공공기술진흥 사업신청서					보안등급	
					■ 일반, □ 보안	
운영기관명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명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공모분야	사업구분	☐ 기술상용화지원		☐ 기술상용화 Fast Track		
	지원코드	37	지원코드명	드론 * 첨단미래기술 목록 참고		
기술의 명칭(발명기관)	수송형 드론과 멀티콥터의 협업을 이용한 저공비행 전용 살포기(국립식량과학원)					
권리번호	출원번호 : 10-2009-000 등록번호 : 10-000		실시계약기간	2000.00.00~2000.00.00		
과제명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대표자	성명		부서			
	전화번호		직급(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과제책임자	성명		부서			
	전화번호		직급(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			
	전화번호		직급(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사업기간	202x. 0. 0. ~ 202x. 11. 30.(0개월)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년차						
2년차		기술상용화	Track	기재	불필요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 (인)

주관기관의 장 : (직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 해당 과제의 사업명을 기재 (주관기관 직접 기재 불필요)
2. 공모분야
 - 사업구분 : 기술상용화지원 / 기술상용화 Fast Track 중 선택하여 체크(단일선택)
 - 지원분야 : 첨단·미래기술 목록을 확인하고 관련된 분야를 선택(단일 선택)
3. 기술의 명칭 :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특허명 및 발명기관 기재
ex) 농촌진흥청 국립00과학원, 00북도 농업기술원
4. 권리번호 : 활용할 특허의 출원번호와 등록특허의 경우 등록번호까지 기재
5. 실시계약기간 : 기술이전 계약기간을 기재
6. 과제명 :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대상제품, 목표(기술)수준을 포함하여 작성
※ 목표(기술)수준은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7. 총 사업기간 및 협약 기간은 협약체결일 ~ 202x. 11. 30.로 작성
 - 기술상용화 Fast Track의 경우 협약체결일 ~ 202x. 11. 30.로 작성
8. 사업비는 현금, 현물의 비율에 맞춰 작성
 - 기술상용화 Track을 지원한 경우 사업비는 총계, 1년차만 기입
 - 기술상용화 Fast Track을 지원한 경우 사업비는 총계, 1년차, 2년차 모두 기입
※ 총사업비 기준 정부출연금 70%이내, 민간부담금 30%이상 비율 준수,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10% 이상 계상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사업계획서

과 제 명

20 . . .

제 출 자	주 관 기 관 명		과 제 책 임 자	
-------	-----------	--	-----------	--

목 차

요약문

I. 과제 개요

1. 과제 필요성 및 목표	00
2. 과제 차별성	00
3. 추진체계 및 개발일정	00

II. 수행기관 일반현황

1.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 현황	00
2. 주요 수행 실적	00
3. 시설(부서)·장비 현황	00

III. 상용화 전략 및 계획

1. 개발(상용화)제품	00
2. 시장분석	00
3. 개발제품의 마케팅 전략	00
4. 사업위험요소(RISK) 분석	00

IV. 사업비

1.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현황	00
2. 사업비 세부내역	00

V.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기대효과	00
2. 사업목표	00

요 약 문

1. 사업계획

사업명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과제번호	작성하지 말 것		
과제명						
지원코드	45	지원코드명	드론			
사업기간	202x. 0. 0. ~ 202x. 11. 30.					
총 사업비	총 천원 (정부출연금 : 천원, 민간부담금 천원)					
목표 및 내용	최종목표	* 최소 200자 ~ 최대 2000자 내외 작성				
	내용	* 최소 200자 ~ 최대 2000자 내외 작성				
	활용계획 및 기대성과	* 최소 200자 ~ 최대 2000자 내외 작성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재원별 사업비 합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합 계						
비목별 사업비 구성(단위:천원)			현금	현물	소계	비율
1차년도	직접비	인건비				
		시설 장비비				
		재료비				
		활동비				
		과제수당				
2차년도	직접비	인건비				
		시설 장비비				
		재료비				
		활동비				
		과제수당				
합계(미지급인건비 제외)						

2. 사업목표

목표 및 목표치	연도		1차년도	가중치 ¹⁾ (%)	2차년도 ²⁾	가중치 ¹⁾ (%)
	목표명					
	고유 목표	지원제품 매출액	1천만원	25	1천만원	30
		고용창출	2명	25	2명	30
	보조 목표	제품개발(개선)	2건		2건	
		KC인증	1건 취득		1건 취득	
		거래처 확보	신규계약 2건		신규계약 2건	
	계			100		100

1) 고유목표의 가중치 합산은 60%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표의 가중치 합산은 100%가 되어야 함

2) Fast Track의 경우 2차년도까지 작성

3) 고유목표는 변경 불가

3. 상용화계획

기업현황	기업형태	☐ 개인기업 ☐ 법인기업	기업설립 연월일	0000년 00월 00일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인력현황	총 000명 (생산 0명, 연구 0명, 마케팅 0명, 기타 0명)													
	매출액	2023년 00,000,000 천원 2022년 00,000,000 천원													
	주 유통처	☐ B2C ☐ B2B 홈쇼핑(00 %), 대형마트(00 %), 백화점(00 %), 온라인쇼핑몰(00 %) 자사사이트(00 %), 자사매장(00 %), 기타 0000 (00 %)													
	주력 품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주력 품1</th><th colspan="2">주력 품2</th></tr> <tr> <th>제 품명</th><th>연 매출액</th><th>제 품명</th><th>연 매출액</th></tr> </thead> <tbody> <tr> <td>어린이 생생사과주스</td><td>000,000천원</td><td></td><td></td></tr> </tbody> </table>			주력 품1		주력 품2		제 품명	연 매출액	제 품명	연 매출액	어린이 생생사과주스	000,000천원	
주력 품1		주력 품2													
제 품명	연 매출액	제 품명	연 매출액												
어린이 생생사과주스	000,000천원														

개발(개선)제품 소개	(작성방향) ♣개발(개선)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제품특징> <table border="1"> <tr> <td>제 품명</td><td>펫 골드</td></tr> <tr> <td>제 품특징</td><td> - 김치 유산균을 활용한 반려동물용 유산균 사료보조제 - 제품·서비스의 주요 특징 및 장점 </td></tr> </table> <차별화 전략> ○ 자사의 경쟁력 및 차별화 전략 - 본 회사는 사료보조제 개발 10년의 경험과 국내 시장점유율 10%의... - 자사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5건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건기식 개발에도... - 수입 파종기 대비 60%의 가격, 생산성 10% 증가...	제 품명	펫 골드	제 품특징	- 김치 유산균을 활용한 반려동물용 유산균 사료보조제 - 제품·서비스의 주요 특징 및 장점							
제 품명	펫 골드											
제 품특징	- 김치 유산균을 활용한 반려동물용 유산균 사료보조제 - 제품·서비스의 주요 특징 및 장점											
<생산전략> <table border="1"> <tr> <td>주원료 및 조달계획</td><td>주원료 : 도담쌀, 유산균.. 원료 조달계획 : 자가생산 100%, 농가 위탁재배생산</td></tr> <tr> <td>제 품생산</td><td>자사공장 100% 생산 : 0,000개/일 생산 가능 OEM 외주가공 생산 : 주식회사 0000식품</td></tr> </table> <판매전략> <table border="1"> <tr> <td>목표시장</td><td>어린이용 과자, 반려동물시장 여성/남성, 어린이/중장년/노령, 주부/직장인...</td></tr> <tr> <td>타겟고객</td><td>동물병원 의사, 10세 이하를 둔 주부 20~30대 직장인 여성</td></tr> <tr> <td>시장 진출시기</td><td>24년 9월 시제품개발완료, 10~11월 시장테스트, 12월 판매</td></tr> <tr> <td>판매전략</td><td>기존 거래처 00마트 및 000홈쇼핑 활용 자사사이트 및 자체매장 판매</td></tr> </table>	주원료 및 조달계획	주원료 : 도담쌀, 유산균.. 원료 조달계획 : 자가생산 100%, 농가 위탁재배생산	제 품생산	자사공장 100% 생산 : 0,000개/일 생산 가능 OEM 외주가공 생산 : 주식회사 0000식품	목표시장	어린이용 과자, 반려동물시장 여성/남성, 어린이/중장년/노령, 주부/직장인...	타겟고객	동물병원 의사, 10세 이하를 둔 주부 20~30대 직장인 여성	시장 진출시기	24년 9월 시제품개발완료, 10~11월 시장테스트, 12월 판매	판매전략	기존 거래처 00마트 및 000홈쇼핑 활용 자사사이트 및 자체매장 판매
주원료 및 조달계획	주원료 : 도담쌀, 유산균.. 원료 조달계획 : 자가생산 100%, 농가 위탁재배생산											
제 품생산	자사공장 100% 생산 : 0,000개/일 생산 가능 OEM 외주가공 생산 : 주식회사 0000식품											
목표시장	어린이용 과자, 반려동물시장 여성/남성, 어린이/중장년/노령, 주부/직장인...											
타겟고객	동물병원 의사, 10세 이하를 둔 주부 20~30대 직장인 여성											
시장 진출시기	24년 9월 시제품개발완료, 10~11월 시장테스트, 12월 판매											
판매전략	기존 거래처 00마트 및 000홈쇼핑 활용 자사사이트 및 자체매장 판매											

사업확장 전략	○ 자사 인력확보 및 고용계획 ○ 제조공장 등 물리적 공간 확장계획 ○ 개발비용 및 대량생산 조달방안 등 전반적 사업 확장 전략
------------	--

1. 과제 필요성 및 목표

1) 과제 필요성

(작성방향) ♣ 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문제점·전망, 국내 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 과제의 시급성 및 중요성

o 기존제품의 한계, 문제점

2) 과제의 목표

(1) 과제 목표 및 내용 (최종결과물 포함)

① 최종 목표

(작성방향) ♣ 동 사업 참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공정)의 수준·성능 및 품질을 기재

② 주요내용

(작성방향) ♣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이전기술, 보유기술), 예정품에 대한 사양·성능·용도·기능 등을 기재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

※ 이전기술 활용 내용

시제품 제작(개선)에 적용된 국유기술의 청구항²⁾

① 입력 가이드부에 결합되고, 입력 가이드부를 출력 회전부의 레일을 따라 이동시켜 기어부에 의해 회전하는 입력

(이전 기술의 필요 청구항 부분을 그대로 기재할 것)

2. 과제 차별성

1) 과제의 우수성 및 차별성 등

(작성방향) ♣ 기존 과제 및 기술현황과의 차별성 중심으로 기재
ex) 기존제품 대비 불량률 00% 감소, 가격 00% 수준..

3. 추진 체계 및 개발 일정

1) 추진 체계

(1) 추진 체계



순번	참여인력명	업무분야	주요수행 업무	동일분야 과제수행 이력
1				
2				
3				
4				
5				

(2) 용역 추진계획 (디자인개발, 외주가공 등 해당 시 모두 작성)

순번	용역명(내용)	수행기관/수행자	용역내용	용역기간	금액(천원)
1				0000.00.00. ~ 0000.00.00.	
2				0000.00.00. ~ 0000.00.00.	

(3) 일정

1차년도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2	시설/장비 구축		■	■	■	■							
3	제품개발 원재료 구입				■	■	■	■					
4	레시피개발, 시험분석						■	■	■	■	■		
5	외주가공, 디자인개발					■	■	■					
6	시제품개발							■	■	■	■		
7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	■	■
8	최종보고서 제출												■

II

수행기관 현황

1.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 현황

1) 과제책임자

(1)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2) 학력

취득년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최종학위 지도교수

(최종 학위 논문명)

(3) 경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2) 기관대표자

(1)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2) 학력

취득년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최종학위 지도교수

(최종 학위 논문명)

(3) 경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등의 영리기관은 대표자 인적사항 개요를 작성할 것

※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으로 대표자 참여시 작성 불필요

3) 참여인력

(1) 참여인력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성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본 사업 참여율 (%)	정부사업 총 참여율 (%)
					전공	최종 학위	취득 년도				
								총괄책임		30	
								시험분석		10	
								제 조		10	
								디자인		10	
								마케팅		10	

※ 과제책임자를 포함하여 작성

※ 참여인력 등록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에 있어야 함(신규로 뽑을 경우 제외)

※ 채용예정인 경우,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기재

※ 참여율의 경우 개인이 정부사업(R&D, 비R&D 포함)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주요 수행 실적

1) 제안과제 연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현황(최근 5년간)

기관명 (소유권자)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2)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단위: 천원)

과제명(전담기관명)	기관	총 연구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소관 중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기관역할				
	주관/공동 등	yy.mm.dd~yy.mm.dd (yy.mm.dd ~yy.mm.dd)			
	주관/공동 등	yy.mm.dd~yy.mm.dd (yy.mm.dd ~yy.mm.dd)			
	주관/공동 등	yy.mm.dd~yy.mm.dd (yy.mm.dd ~yy.mm.dd)			
	주관/공동 등	yy.mm.dd~yy.mm.dd (yy.mm.dd ~yy.mm.dd)			
	주관/공동 등	yy.mm.dd~yy.mm.dd (yy.mm.dd ~yy.mm.dd)			

3. 시설·장비 현황

1) 시설·장비 보유현황

(단위: 천원)

보유기관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구입가격	구입연도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시 "O")
	XXXX							
	XXXX							
	XXXX							
	XXXX							

※ 자사공장 보유 설비만 작성,

2) 장비 구축·구매 계획(1천만 원 이상 장비의 경우 작성)

(단위: 천원)

구분 (구매, 임대, 제작의뢰)	보유기관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구축비용	구축시점	구축장소
							2024.00	
							2024.00	

Ⅲ 상용화 전략 및 계획

1. 개발(상용화) 제품

(작성방향) ♣ 개발 및 개선, 상용화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제품명	김치 유산균을 활용한 반려동물용 유산균 사료보조제	<사진 또는 도면>
제품특징	- 제품·서비스의 주요 특징 및 장점 - 자사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5건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건기식 개발에도... - 수입 파종기 대비 60%의 가격, 생산성 10% 증가...	

2. 시장분석

(작성방향) ♣ 국내외 시장규모와 산업화(시장확장) 가능성을 보유(또는 검색) 자료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각 항목별로 주어진 도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닌 서술을 통해서 부연설명 가능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년도	(20 년) 현재년도	(20 년) 종료 0년후	(20 년) 종료 0년후	(20 년) 종료 0년후
세계 시장 규모				
한국 시장 규모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 규모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수요처	국명	수요량 ¹⁾	관련제품 ²⁾

* ¹⁾본 기술/제품의 수요량(단위 포함) - 파악이 가능한 경우 작성

* ²⁾본 기술/제품이 수요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의 최종 제품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제품 현황

기업명	기술·제품 특징	단점
	성능, 가격..	

4) STP전략



3. 개발제품의 마케팅 전략

1) 상용화전략 개요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의 상용화 추진개요

(1) 핵심가치(고객에게 제공하는 핵심가치)

○ 예) 전략 수입되는 소재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산 기능성소재 내수화

(2) 4P(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촉진(Promtion)) 분석

제품 (Product)	어린이용 과자, 반려동물시장 여성/남성, 어린이/중장년/노령, 주부/직장인...
가격 (Price)	
유통전략 (Place)	
판매전략 (Promotion)	기존 거래처 00마트 및 000홈쇼핑 활용 자사사이트 및 자체매장 판매

(3) 상용화 실행 계획

생산 계획	제품 또는 기술의 개발, 생산, 공급 체계 제시
인력 계획	필요한 인력 구성, 조직 구조, 역할 제시
협력 관계	제품 생산 등 실행을 위한 협력 관계 제시

2) 재무 계획 및 시장점유율

(1) 매출 예측

○ 상용화 형태, 예상 단가,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기재(개발 시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 구분하여 작성)

제품명	판매처	판매 단가 (천원)	예상 연간 판매량(개)	예상 판매기간(년)	예상 총판매금 (천원)	비고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2) 예상 손익 분석

구분		제품 1 (단위 : 원)	제품 2 (단위 : 원)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매출 - 매출원가		
영업이익	매출총이익 - 운영비용		
세전이익	영업이익 - 기타비용		
순이익	세전이익 - 세금		
손익분기점	고정비 / (판매가격 - 변동비)		

(3) 예상 시장점유율

구분		(20 년) 종료 0년후	(20 년) 종료 0년후	(20 년) 종료 0년후
국 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 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판매단가(달러)			
	해외매출액(달러)			
당사 생산능력 ¹⁾				

* 당사 생산능력¹⁾은 본 기술제품 상용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4. 사업위협요소(RISK) 분석

사업위협요소	원인	해결방안
기술		
시장		
재무 및 운영		
법적/ 정치 및 사회적		
환경		

* 신청기관에서 사업운영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내용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작성하지 않은 사업위협요소는 삭제

IV 사업비

(작성방향) ♣ 사업비는 천원단위로 작성하며, 기술상용화지원 1단계는 2차년도 기재 불필요

1.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현황

1)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소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차년도	70,000		7,000		63,000		70,000		140,000	
	50	%	10	%	90	%	50	%	100	
2차년도	70,000		7,000		63,000		70,000		140,000	
	50	%	10	%	90	%	50	%	100	
합계	140,000		14,000		126,000		140,000		280,000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은 천원단위로 작성,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으로 계상하고, 연도별 비율 준수

* 정부출연금은 최대 100,000천원까지 신청 가능

2. 사업비 세부내역

1) 비목별 소요명세

(1)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천원)

구분	구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 (A)	참여기간 (B)	인건비 계상율 % (C)	합 계 (A×B×C)		
								현금	현물	계
1차년도	인건비	기존	홍길동	대표	3,500	10개월	30	-	9,450	9,450
		신규	김영희	대리	2,000	10개월	10	1,800	-	1,800
합 계										
2차년도	인건비	기존	홍길동	대표	3,500	10개월	30	-	9,450	9,450
		신규	김영희	대리	2,000	10개월	10	1,800	-	1,800
합 계										

※ 인건비 계상 : 월급여(A) × 참여기간(B) × 참여율(C)

※ 월급여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금액으로 함. 실지금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1명의 인력은 현금, 현물 중 한가지로만 계상 가능(현금, 현물 나눠서 계상 불가)

※ 인건비계상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입 가능하며, 인건비 합계액은 천원 단위에서 절사하여 표기

※ 인건비 계상 시 기존 인력은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신규인력(채용일 기준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채용)의 경우 현금 계상 가능

(2) 비목별 소요명세

구분	비목별 사업비 구성(단위:천원)		현금	현물	소계	비율
1차년도	비목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활동비				
		과제수당				
	소계					
2차년도	비목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활동비				
		과제수당				
	소계					
총 계						

※ 사업비에는 공급가액을 적을 것(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부가세는 본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시설·장비비’의 현물계상은 구입단가 또는 사용료의 20% 이내로 하여야 하며, 자사 보유 설비 중에서 구입일이 과제 시작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계상 연도 말일 이후인 경우만 가능

※ ‘재료비’의 현물계상은 협약체결일 이전 구입보유한 재료에 대해서 계상이 가능하며, 구입단가 100% 계상 가능, ‘재료비’ 세부내역 작성 시, 유사한 품목끼리 묶어서 계상할 것

※ 활동비 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총사업비의 40% 이내로 계상 할 것

※ 사업에 필요한 기기, 기자재 및 시설은 수행기관의 기보유 장비·시설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농진청 등의 장비 등을 우선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로부터 임차 등이 불가하여 1,000만원 이상(부가세 및 부대시설 비용 포함)의 장비를 구입할 경우 [붙임 5] 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별도 작성

※ ‘활동비’ 작성 시,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감사비(1,000천원)는 필수로 포함시키며 최종 사업선정 시 금액 조정 예정

3) 사업비 사용내역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회수)	단가 (천원)	금액 (천원)	용도	비고
연 차	비 목	세 부 내 역							
1차년도	인건비	신규인건비							현금
	소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시설장비비	혼합기		대	1	40,000	4,000		현물
		여과기	20L	대	1	1,000	1,000		현금
	소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재 료 비	곡물류 (쌀, 콩, 등)		식	1	1,000	1,000		현물
		원물분쇄		식	1	1,000	1,000		
		시럽류(포도 농축액)		식	1	1,000	1,000		현금
	소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활동비	디자인개발		식	1	1,000	1,000		
		회계감사비		식	1	1,000	1,000		
	소계		현금 : 천원 * 현물불가						
	과제수당	과제수당							
	소계		현금 : 천원 * 현물불가						
합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2차년도	인건비	신규인건비							현금
	소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시설장비비	혼합기		대	1	40,000	4,000		현물
		여과기	20L	대	1	1,000	1,000		현금
	소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재 료 비	곡물류 (쌀, 콩, 등)		식	1	1,000	1,000		현물
		원물분쇄		식	1	1,000	1,000		
		시럽류(포도 농축액)		식	1	1,000	1,000		현금
	소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활동비	디자인개발		식	1	1,000	1,000		
		회계감사비		식	1	1,000	1,000		
	소계		현금 : 천원 * 현물불가						
	과제수당	과제수당							
	소계		현금 : 천원 * 현물불가						
합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총 계									

※ 유사품목은 묶어서 계상할 수 있음

1. 기대 효과

(1) 과학기술적 효과

- 선진국(미국 000사) 수준의 제품

(2) 경제산업적 효과

- 경제기여도(매출)
- 농가소득향상

(3) 사회적 효과

- 사회가치 기여도

2. 사업목표

목표명 \ 연도		1차년도	가중치 ¹⁾ (%)	2차년도 ²⁾	가중치 ¹⁾ (%)
고유 목표 ³⁾	지원제품 매출액	1천만원	25	1천만원	30
	고용창출	2명	25	2명	30
	지원분야별 사업화 필수지표				
보조 목표	제품개발(개선)	2건		2건	
	KC인증	1건 취득		1건 취득	
	거래처 확보	신규계약 2건		신규계약 2건	
계			100		100

1) 고유목표의 가중치 합산은 60%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표의 가중치 합산은 100%가 되어야 함

2) Fast Track의 경우 2차년도까지 작성

3) 고유목표는 변경 불가

[예시] 지원분야별 사업화 필수지표

분야	필수지표
식품	품목제조보고, 영양성분분석, 유통기한 설정 시험 등
기계	KC인증, CE인증, KS인증, 농기계검정 보고서 등
농자재	비료 공정 규격 인증, 친환경 인증, KS인증 등
축산	사료 성분 검사, 잔류항생제검사 등
소재(화장품 등)	CFDA인증, 건기식 인증, KC인증, EWG인증 등

붙임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사 업 명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과 제 명	
주관기관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협약 및 협약변경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원 등) 여부의 확인

- ✓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정산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주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국가연구자번호,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사업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 · 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동의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목적

-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원 등) 여부의 확인

○ 국가연구자번호 보유 · 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국가연구자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원) 등 요구자료 제공
- ✓ 사업 관련 타 운영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진흥청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운영기관, 사업비 관리 및 취급은행,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운영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주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국가연구자번호,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사업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과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급(직위)	국가연구자번호	성별	정보 이용 동의 (서명)
				남/여	

* 과제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을 기재하여야 함

년 월 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시설·장비 도입계획서

- * 공급가 및 부가세 포함 기준 1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
- * 1천만 원 이상의 도입장비가 2대 도입 할 경우 각 장비에 대해 아래의 서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작성
- *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장비에 대해서 교차견적서를 제시해야하며, 미제시의 경우 승인이 불허될 수 있음

1. 설비 개요

*도입개요는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비고
도입 시설·장비명	표 아래 작성요령 참조	
도입가격(예상)	천 원	
취득방법	[내/외자 구매], [제작의뢰], [자체제작] 등으로 기재	
장비도입 예상일정(발주~입고)	설비도입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발주 : ~20 .3.31 입찰 : ~20 .5.31 계약 및 입고 : ~20 .7.31 설비설치완료 및 서비스개시 : ~20 .8.31	
계약방법 및 절차	설비도입 절차관련 특이사항 기재(필요시)	

작성요령

☐ 도입장비명 작성요령

- ① 일반화된 장비명을 사용
- ② 일반화된 장비명이 없을 경우에는 장비견적서에 명시된 장비명 사용
- ③ 장비견적서의 장비명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명함.
* 장비명이 영문일 경우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

☐ 도입가격(예상) 작성요령

- o 사업계획서에 장비사양과 구매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비견적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작성하되, 사업비에서는 부가세집행은 불가함)

2. 도입 내용 및 필요성

1) 도입 필요성 및 적절성 (상세기재 요망)

○ 설비 도입의 필요성 (목적, 내용)

-

○ 설비 도입의 적절성 (해당 설비의 목표달성에 있어서 성능, 용량, 목적 등의 적절성 상세 기재)

-

2) 용도, 주요 사양 (상세기재 요망)

○ 설비 용도

-

○ 주요 사양

-

3) 도입 효과 (해당 설비 도입 후 기존 보유 장비와 연계한 공정개선 효과 상세 기재)

○

-

○ 설비 도입 전·후 공정도 (필수)

-

4) 연 평균 가동률 (기술이전 제품 생산 계획에 기초한 가동률 상세 기재)

* $(\text{연간 총장비이용시간}) \times 100 / (40\text{시간} \times 52\text{주})$ 로 산출하되, 연 평균가동률은 최대 10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 연 평균가동률은 장비의 이력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장비활용평가의 기준이 되오니 신중히 산정할 것을 요청함.

* 가동률산정의 근거를 자세히 제시할 것.

5) 견적서 (2곳 이상)

우대가점 해당표

□ 우대가점 * 우대가점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구 분	반 영 항 목	가점	해당여부 (O/X)												
최근 5년 이내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또는 공공기술진흥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 업체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또는 공공기술진흥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종합평점 90점 이상)등급으로 기재된 최종평가 결과표 * '21년 참여업체부터 해당	2점													
최근 5년 이내 농촌진흥청장이 수여한 표창을 받은 업체 또는 대표	수상기업명 또는 대표명이 기입된 농촌진흥청장 표창	2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인증서	1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의한 경영혁신형 농산업체(MAIN-BIZ)	경영혁신형 농산업체(MAIN-BIZ) 인증서	1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1점													
최근 5년 이내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 또는 공공기술진흥사업 매출 성과등급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정부출연금 대비 과제관련 매출 성과 ※ 성과등급 지수 = 사업수행을 통해 발생된 제품 매출액(백만원) (조사기간 누적매출) ÷ 정부출연금(백만원) <table><tr><th>성과등급</th><th>성과등급 지수</th><th>가점</th></tr><tr><td>A</td><td>10점 이상</td><td>3</td></tr><tr><td>B</td><td>5점 이상 ~ 10점 미만</td><td>2</td></tr><tr><td>C</td><td>3점 이상 ~ 5점 미만</td><td>1</td></tr></table>	성과등급	성과등급 지수	가점	A	10점 이상	3	B	5점 이상 ~ 10점 미만	2	C	3점 이상 ~ 5점 미만	1	3점 ~ 1점	
성과등급	성과등급 지수	가점													
A	10점 이상	3													
B	5점 이상 ~ 10점 미만	2													
C	3점 이상 ~ 5점 미만	1													
최근 5년 이내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 또는 공공기술진흥사업 일자리창출 성과등급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정부출연금 10억원 당 일자리 창출 수 ※ 성과등급 지수 = 신규 일자리창출수 × 10억원 ÷ 정부출연금(원) <table><tr><th>성과등급</th><th>성과등급 지수</th><th>가점</th></tr><tr><td>A</td><td>100점 이상</td><td>3</td></tr><tr><td>B</td><td>50점 이상 ~ 100점 미만</td><td>2</td></tr><tr><td>C</td><td>30점 이상 ~ 50점 미만</td><td>1</td></tr></table> * 지원 당해연도 실적이며, 취업 지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	성과등급	성과등급 지수	가점	A	100점 이상	3	B	50점 이상 ~ 100점 미만	2	C	30점 이상 ~ 50점 미만	1	3점 ~ 1점	
성과등급	성과등급 지수	가점													
A	100점 이상	3													
B	50점 이상 ~ 100점 미만	2													
C	30점 이상 ~ 50점 미만	1													

* 증빙서류 별첨

신규인력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사 업 명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과 제 명					
주관기관					
신규인력 채용(예정)	성 명	입사일	생년월일	최종학위 (전공)	비고
	홍길동	2017. 3. 10	1980.3.10	박사 (기계공학)	현물계상
	채용예정	2021. 5월 예정			현금계상
	김철수	2021. 2. 1	1997.5.5	학사 (전자공학)	현물계상

위 사업 수행과 관련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 신규 채용 인력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채용 완료 시)

주관기관 :

대 표 자 :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신규인력 : 과제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과제수행종료일 이내 신규 채용한 자

사업비의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인건비	1. 인건비는 협약대상 주관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참여인력이 해당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인력이 해당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과제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가.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계상은 현물계상만 가능하다. 나.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조건 <공통사항> 1)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2) 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인 경우 3) 중소·중견기업·대기업의 기존인력 4)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1인당 신청 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해당 시 [표준협약서 별첨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신규과제의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전부터 과제 수행종료일 이내에 신규채용한 자를 말한다. 5. 인건비 산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세부 산정기준</th></tr> </thead> <tbody> <tr> <td>법인사업자</td><td>▪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금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td></tr> <tr> <td>개인사업자 대표</td><td>▪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 이하인 대표자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고용노동부 최근년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기준</td></tr> </tbody> </table>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구 분	세부 산정기준	법인사업자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금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개인사업자 대표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 이하인 대표자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고용노동부 최근년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법인사업자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금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개인사업자 대표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 이하인 대표자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고용노동부 최근년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기준						
시설·장비비	1. 시설·장비 구입·설치비: 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시설·장비 임차비: 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임차비 3. 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4. 주관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구입가*로 계상하여야 함 * 구입가: 구매 또는 개발된 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 5.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공급가액 1천만 원 이상의 기자재 및 장비 등을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제3-1호 서식]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사업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신청시 요청한 1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 구입은 평가위에서 검토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6.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운영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함. 이때 운영기관은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처리할 수 있음.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1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이상의 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1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 계획에 반영된 1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 7. 주관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과제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사업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9. (영리기관의 경우)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과제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함 10. 하나의 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재료비	1. 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제품·설비 제작에 필요한 비용(외주가공비 포함) 3. 재료비는 과제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음 4. 영리기관의 경우 생산·판매하거나 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재료 구입비(공급가액 기준)의 100%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활동비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시험·성능분석비, 디자인 제작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가. 전문가활용비(자문비) : 주관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함 나. 시험·성능분석비 : 시제품 시험, 성능분석, 검인증 등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다. 디자인 제작비 : 시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팜플렛, 포장지 등 디자인 제작에 실제 필요한 비용, 개발된 디자인을 활용한 제품(포장지 등) 제작비용도 계상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다음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사용함.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65%까지 사용할 수 있음 3. 홍보비 : 전시회·박람회 참가 비용 4.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해당 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음. * 해당 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함.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에도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함 -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비는 운영기관 규정에 따라 3만원으로 하며,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출장비: 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가.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함. 나.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 다. 국외 출장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함 6.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업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사용할 수 있음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용기한을 준용함 - 주관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 사용계약기간이 과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용기준을 준용함 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	--

	8. 인력지원비: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과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함 *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과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사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인력지원비를 계상할 수 없음 가. 참여인력이 아닌 자의 인력지원비 나. 참여인력의 종신 학회비 다. 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라. 참여인력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주관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바.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인력의 식대 8.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사무용품비 등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사업비 지원기관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논문게재료는 사용할 수 있음
과제수당	1. 과제수당은 총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가능하며, 과제수당 지급 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함. 2. 참여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 한명의 연구자에게 70%이상 지급은 불가함. 단, 참여인력인 1명인 경우 지급할 수 있음. 3.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원래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를 포함)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만큼 사용할 수 있음 4. 과제수당 지급 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과제수당은 정산 시 회수됨 5. 원래계획보다 인건비를 증액한다 하더라도 과제수당의 증액은 불가함
성과활용 지원비	1.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주관기관이 기술이전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거래에 필요한 비용 다.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2.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평가구분		평가지표
서 면 평 가	문제인식	- 기술·제품의 개발 필요성 - 기술·제품의 개발 목표
	실행가능성	- 기술·제품 개발 계획의 적정성 - 사업비 집행계획의 합리성
	성장전략	- 기술·제품 개발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기술·제품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기술활용	- 기술·제품의 신규성 및 차별성 - 공공기술 활용의 적합성
	기업구성	- 참여인력 역량 및 구성 - 보유 인프라 수준의 적정성
대 면 평 가	기술성	- (이전)기술에 대한 활용, 사전준비성 - 과제의 독창성 및 차별성
	사업성	- 목표 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 - 목표 시제품의 매출발생 가능성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체계성 - 투입인력, 수행팀 구성의 적정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실현성
	경영능력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능력 및 추진력 - 사업수행기관의 경영 안전성